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41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신청자격 및 사업비 정산기준을 완화하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최종보고 적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사업 적용 범위 확대(제3조 ①항)

-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사업 추가

나. 사업계획서 검토·확인 내용 정비(제8조 ②항)

-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유무를 파악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다.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완화(제8조 ③항)

-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사업 신청자격 부여

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최종보고 적용기준 정비(제24조 ④항)

- 일부 사업의 경우 최종평가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므로 보고시기 및 방법을 관리지침에 명시하도록 규정

마. 사업비 정산기준 완화(제26조 ①, ⑦항)

-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기한 확대 및 연구과제추진비 비목추가로 인한 정산면제규정 추가

* 국내 출장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바.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정비(별표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비목정비 및 계상기준 완화

사.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정비(별표3)

- 사유별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재편성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우 출연금 환수 기한을 명시하여 사후관리 명확화

아. 운영상 문제점 보완(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 기술자료 임치 후 서류제출 부담 완화, 출연금 환수 기한 명시, 주관기관·참여기업 등 범위 및 이의신청 기간 명확화

자. 기타 용어 정비(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등)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전화 : 042-481-4442, Fax : 042-481-3289)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같은 법-------- ----------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개발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	12. ---------- 시작일부터-- ---------- ----------.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19. "기술료"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19. ---------- 각 호에 따른------ ---------- ---------- ---------- ----------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 ---------- ---------- ---------- ----.
20. ~ 24. (생 략)	20. ~ 2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① 기술개발사업은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4.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삭 제>
5.·6. (생 략)	4.·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제품·공정개선사업	6.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8.·9. (생 략)	7.·8.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신 설>	9.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신 설>	10.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사업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제1호 내지 제11호 사업의 운영체제 및 제도개선을 효율	13.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사업의 운영체제 및 제도개선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평가 사업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평가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기술개발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술수요조사 등) ①·② (생 략)	제4조(기술수요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중소기업 R&D기획지원) ① (생 략)	제5조(중소기업 R&D기획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② (생 략)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청장은 국내외 기술 및 무역 등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	③ ----------

정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대해서 ---------- 범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제3조제1항제6호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7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 제6조에 따라----------제3조제1항제5호---------- ---------- 따른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업비 소요명세서	7. ------ 명세서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 (생 략)	제8조(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청장은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0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② ----------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청장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기관 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사업은 제외한다.)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 11. (생 략)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③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4. ---------- ---------- ----------

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 ----------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5.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5. ---------- ---------- ---------- ---------- ---------- ---. ---------- ---------- ---------- ---------- ---------- -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단서 신설>	6. ---------- ----------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10. ---------- ----------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가.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가.-------- 마감일부터-- ----------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과제선정평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하여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선정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9조(과제선정평가 등) ① ---- ---------- ---------- ---------- ---------- ---------- ---------- ---------- 따른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대상,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② ---------- ---------- ---------- ---------- ---------- ---------- 따른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	1. 법 제15조에 따른------ 기

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3. ---------- 제25조에 따른----------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4. ---------- 제2조에 따른----------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5. ---------- 제2조에 따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청장은 수행과정상의 평가결과 중단, 실패이거나, 사업화 성과가 미흡한 경우,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가 새로운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신청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③ ---------- 신청할----------
제10조(평가위원단) ① ~ ④ (생략)	제10조(평가위원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⑤ ---------- 수행기관의 연구시설·장비 ----------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5. 연구시설·장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⑤ ---------- 따른다.
제12조(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신청사업계획서 상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공공연구기관인 경우 1억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기자재(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	1. ----------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연구시설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 --- ---------- 도입의 ----------
2.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공공연구기관인 경우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 ---------- ---- 연구시설·장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 여부 및 변경은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연구시설·장비----- ---- ---------- - 과반수---------- --.
④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의 도입 목적이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④ ---------- ---------- ---------- -------- 연구시설·장비--- ---------- ----------.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 ---------- ---------- ---------- ----------, ---------- ---------- ----------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	② ---------- 통보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등의 장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터--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단, 주관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주관기관 등의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3. ---------- ---------- ---------- 협약체결일부터-- ---------- ----------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③ -------- 국립·공립연구기관---------- ---------- ----------, ----- ---------- ----------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	④ ----------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 ----------

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 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내용이 기술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④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변경은 관리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 제3조제1항제5호---------- ----------.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34조에서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2. 제15조제2항3호에 따라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기한내 민간부담 현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2. ---------- ----- 기한까지 ---------- -- 납부하지 -------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출연금의 지급) ① (생략)	제18조(출연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장에게 착수시기, 개발기간 등	② ---------- 제15조에 따라------ ----------

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출연금을 교부함에 있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⑤ ---------- ---------- ---------- ---------- ---------- 따른다.
제19조(사업비의 조성) ① 사업비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 포함)과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제19조(사업비의 조성) ① ----- -- 제18조에 따른------ ---- ---------- ---------- ---------- ---------- ----------.
②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② ---------- ---------- ---------- ---------- --- 따른다.
③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 ----------. ---------- --- 필요한--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2. ---------- 연구시설·장비---------- ---------- 연구기관에 한정----------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	4. ----- 국립·공립연구기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① (생 략)	제20조(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② ---------- ---------- ---------- ---------- ---------- ---------- ---------- 따른다.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 제19조에 따른------ ---------- ---------- ---------- ---------- -----. ---- 국립·공립연구기관---------- ----------

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 ---------- ---------- ---------- ------.
② 사업비의 사용은 수행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5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 ---------- --- 따른다.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소기업청장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통합수탁은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비 및 이자의 관리·사용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⑦ ---------- ---------- ---------- ---------- ---------- 따른다.
⑧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을 위한 기자재 등의 구매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관리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⑧ ---------- ---------- ---------- ---------- ---------- 따른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진도보고 및 점검 등) ①	제22조(진도보고 및 점검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도보고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결과를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진도보고서 점검 및 제4항에 대한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⑤ ---------- 로 ------.
⑥ 진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⑥ ---------- 따른다.
제23조(단계보고 및 평가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단계보고 및 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계평가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 3등급으로 구분하며,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	④ ---------- 로------ ----------

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계평가와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계속지원 여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⑤ ---------- ---------- ---------- ---------- ---------- ---------- ---------- ---------- 따른다.
제24조(최종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최종보고) ① --------- ---------- 종료일부터--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 기술개발결과 중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 ---------- ---------- ------ 대해서---------- ---------.
<신 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5조(최종평가) ① ~ ③ (생략)	제25조(최종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④ ---------- 따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제21조에 따라---------- 종료일부터 3개월(포인트제 적용과제의 경우 2개월)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기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 한정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기관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u>제반증빙 서류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u>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u>증빙 자료와 제21조에 따른</u>---------- ---------- ---------- ---------- ---------- ---------- ---------- ---------- ---------.
<u><신 설></u>	<u>⑦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관리기관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기관은 제6항에 따라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u>
<u>⑦ 제3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제1항에서 제5항의 관리기관은 전문기관으로 갈음한다.</u>	<u>⑧ 제3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제1항에서 제5항 및 제7항의 관리기관은 전문기관으로 갈음한다.</u>
제27조(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제27조(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u>연구기자재, 연구시설</u>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① ---------- ---------- <u>연구시설·장비</u>----- ---------- ---------- ---------- ---------- ----------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 ---------- -------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 ---------- ---------- 유형적·무형적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결과의 활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 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28조(결과의 활용) ① ------- ---------- 제24조 ---------- ---------- ----------.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매년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평가결과 실패과제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② 제25조에 따라------ ---- ---------- ---------- ---------- ----------. ---------- ---------- ---------- ---------- ---------- ----------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 활용실적을 토대로 매년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라----------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술개발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한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 제1항에서 제3항까지---------- 현장방문조사---------- 현장방문조사----------.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성과분석 및 현장추적조사 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제3항 및 제4항---------- 현장방문조사 ----------.
⑥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성과분석 및 현장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등급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⑥ ---------- 현장방문조사 ---------- 따른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	⑦ ----------

업 결과에 대해 별도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제34조에 규정한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과 의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 -- --------- 따른- ---------- ------.
⑧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입치하고 그 근거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입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수치인에게 입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료의 징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등(단,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3항에 따른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술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료의 징수) ① ----- ------- 제25조에 따라------ ----------, ----------
② 기술료 징수·감면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 ----- 징수, 감경 또는 면제 ---------- 법 제28조에 따라------ ---------- ---------- 따른다.
제30조(제재 등) ① 전문기관의	제30조(제재 등) ① ----------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 ---------- ---------- ----------, --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13. ---------- ---------- ---------- -------- 따르지 않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 ---------- ---------- ---------- 범위---------- ---------- ---------- --------. 이때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중소기업청장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과제책임자·참여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u>기한 내에</u>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 --- <u>기한까지</u>-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출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출연금 관리 및 환수) ① ---.
<u>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u>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분기별 보고)	<u>1. 제26조에 따른</u>--
<u>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분기별 보고)	<u>2. 제30조제1항에 따른</u> --
② <u>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u>	② <u>제30조제1항에 따라</u>------

여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개발사업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 및 절차의 사업별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 ---------- 범위---------- 따른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 -------연구시설·장비----- ----------.
제33조(전문기관) ① ~ ③ (생략)	제33조(전문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기 제32조제1항4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6호의 경우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 ----- 제3조제1항제5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주관기관 등) ① 주관기관은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제34조(주관기관 등) ① ----------

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수행중 또는 수행한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활용현황보고서 및 제28조제4항에 따른 현장추적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	7. ---------- -------- 현장방문조사 ----------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15.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5. 연구시설·장비----- ---------- --
16.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6. 회생, 파산, 부정행위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의한다.	④ ---------- -------- 따른다.
제35조(공동개발기관)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공동개발기관은 제34조제1항의 주관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35조(공동개발기관) ① ---------- ---------- 수행 중 또는 수행한 ---------- ---.
② 공동개발기관의 유무, 자격	② ----------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의한다.	---------- ---------- 따른다.
제36조(참여기업 및 실시기업)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36조(참여기업 및 실시기업) ① ---------- ---------- 수행 중 또는 수행한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활용현황보고서 및 제28조제4항에 따른 현장추적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	5. ---------- ---------- -------- 현장방문조사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8. 연구시설·장비----- ---- ---------- --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② 참여기업의 유무, 자격 및 형태, 협약 방법, 민간부담금 부담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의한다.	② ---------- ---------- ---------- ----------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공동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실시기업을 정하는	④ ---------- ----------. ---------- ---------- ---------- ----------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외로 한다.
제38조(과제책임자) ① 과제책임자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8조(과제책임자)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6. 연구시설·장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자격과 권한은 위탁받은 개발과제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4조제2항에 따른---------- ----------에서--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제34조에 따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이의신청)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	제39조(이의신청) ① ----------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날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제선정평가 결과	1. 제9조에 따른------ -----------
2.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평가 결과	2. --------------- 제25조에 따른------ ------------------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3. 제26조에 따른------ -------------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	4. 제29조에 따른------ ---------
5.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치	5.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41조(기술개발사업의 승계)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기업에 한한다)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제41조(기술개발사업의 승계) ① 제15조에 따라-------- ---------- ---- 한정한다)----------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
제44조(기획평가비 지급)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별 사업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기획평가비 지급) ------ ---------- 범위--------- ---------- ---------- ---------- ---------- 비용---------- ----------.
제46조(개발기술의 보안) ① ~ ④ (생 략)	제46조(개발기술의 보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⑤ ---------- ---------- ---------- ----------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 대해서는 ----------
제49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운영) 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9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운영) ---------- ---- 제3조에 따른------ --- ------.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② (생 략)	제2조(경과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최종평가)제3항제2호의 "성실수행" 분류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협약과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최종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최종평가) 제3항 제2호의 "성실수행" 분류는 2014년

	2월 일 이후 실시하는 최종평가 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추단 신설>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대학 정규직 교수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연구원의 경우 참여율은 명기하되, 사업비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소속의 내부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신설>

[별표 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기술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신설> <신설> 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나. 세부사업별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은 세부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다.----------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삭제>	<삭제>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참고>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이상 외부인건비 적용기준(100%참여시) • 월정액 : 학사과정(1,000,000원), 석사과정(1,800,000원), 박사과정(2,500,000원), 박사이상(3,000,000원)		학생인건비	--기술----------	1.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참고>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이상 외부인건비 적용기준(100%참여시) • 월정액 : 학사과정(1,000,000원), 석사과정(1,800,000원), 박사과정(2,500,000원), 박사후연구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연구장비·재료비	1.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장비의 설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장비·재료비	1.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임상 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 조사비, 표준정보 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신설> <신설>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 --- --- --- --- --- ---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 --- --- ---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 기준이 있는데도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우만 해당한다) 등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설>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직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하며 제26조제7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내 출장여비는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되, 비영리기관의 경우에 한함		연구수당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 ----------
	위탁연구개발비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 포함)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위탁연구개발비	기술개발의 ---------- ---------- ---------- ---------- 드는 -----	---------- 원칙적으로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생략)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1 . ---------- -----기관---------- ---------- ---------- ---------- ---------- 2. (현행과 같음)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신설>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삭제>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 등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2. 연구지원비	나.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 ---------- ---------- ---------- ---------- ---------- ----------
		가. ~ 나. (생략)	2. 연구지원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 ---------- ---------- ---------- ---------- ---------- ---------- ---------- ---------- --------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	라. ---------- ---------- ---------- ----------

현행	개정안
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기술개발과제 ------------------------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	사. ------------------ 학술용 도서 --

		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생략)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제품 및 기술 인증, 기술자료 입치(2년간 입치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	

		---------- ---------- ---------- ---------- ---------- ---------- - 아.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 ---------- ---------- ---------- -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 ---------- ---------- 다. 기술개발 결산 ---------- ---------- ---------- ---------- --------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34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34조제2항)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 ---------- ----------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한국신발피혁연구원, ----------, 다이텍연구원, ---------- ---------- KOTITI시험연구원, ----------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 -----
5. ~ 12.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조문 : 제17조, 제30조, 제31조, 제46조)** ※ 참여제한 합산기준 : 아래 각호 또는 각호내 참여제한 사유별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I.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조문 : 제17조, 제30조, 제31조, 제46조)** ※ 참여제한 합산기준 : 아래 각호 또는 각호내 참여제한 사유별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I.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다. 부도·폐업·파산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을
라.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을
<신설>		
마.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정책상 중단된 경우 <후단 신설>	면제	면제
바. 민간투자연계사업의 경우 투자기관이 투자금 조기회수 등 투자를 철회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	면제
사.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면제
<신설>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다. 부도·폐업·파산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이내[1) 2)]
라.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이내[3]
마.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을
바.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정책상 중단된 경우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기업이 시장변화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개발 및 투자계획을 철회하여 중단된 경우 포함 <삭제>	면제	환수하지 않을
사.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을
1) 파산의 경우 법원의 재무계획 상 활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2), 3)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정당한 사유(타 기관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다.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라.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4. (생략)

5. (생략)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전액
다.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신설>	3년	전액
라. 투자연계 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개발을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투자기관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약을 위반하여 부		

		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다.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라.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전액
다.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라. 민간투자연계사업의 경우 투자기관이 투자금 조기회수 등 투자를 철회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마. 투자연계 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개발을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투자기관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약을 위반하여 부		

정행위를 한 경우		
1)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관 2년	환수하지 않음
2)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주관기관 및 해당 투자기관 1년	환수하지 않음
3)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가)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 있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나) 귀책사유가 해당투자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투자기관 1년	환수하지 않음
4)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주관기관 및 해당 투자기관 3년	전액[1]
5)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주관기관 및 해당 투자기관 3년	전액[1]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바.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금액
사. 협약이후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관단되는 경우	면제	전액

[1]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양도된 경우는 제외
<추단 신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정행위를 한 경우		
1)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관 2년	환수하지 않음
2)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투자연계과제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투자적격기관에 양도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한함)	주관기관 및 해당 투자기관 1년	환수하지 않음
3)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가)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 있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나) 귀책사유가 해당투자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투자기관 1년	환수하지 않음
4)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가장납입 등)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주관기관 및 해당 투자기관 3년	전액[1]
5)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2]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주관기관 및 해당 투자기관 3년	전액[1]
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사.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해당금액
아. 협약이후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관단되는 경우	면제	전액

[1]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양도된 경우는 제외
* 투자기관의 참여제한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의 투자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제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금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년	해당금액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1]	1년	환수하지 않음
2) 영업장이 폐쇄·멸실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부량 등 경영악화		
가)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이내 1회에 한함)
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1년	환수하지 않음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신설>

1) 파산의 경우 법원의 재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8. (생략)

9.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금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년	해당금액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1]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2]	1년	해당금액
2) 영업장이 폐쇄·멸실된 경우	1년	해당금액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부량 등 경영악화		
가)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이내 1회에 한함)
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1년	환수하지 않음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1)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술료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재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파산의 경우 법원의 재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금액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1]	1년	환수하지 않을
2) 영업장이 폐쇄·멸실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을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		
가)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이내 1회에 한함)
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1년	환수하지 않음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신설>

[1] 파산의 경우 법원의 재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금액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1]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2]	1년	해당금액
2) 영업장이 폐쇄·멸실된 경우	1년	해당금액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		
가)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이내 1회에 한함)
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1년	환수하지 않음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1]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파산의 경우 법원의 재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연 락 처	(042) 481 - 4442